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 본회는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회라고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성품을 가진 미래 리더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06.13.>

1. 올바른 학문 활동을 위한 대학 문화 조성
2.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 및 활동
3. 성품 배양을 위한 각종 사업 및 활동

제3조(설치) 본회는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내에 둔다.

제4조(회원의 자격) 본 회의 회원은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재학생으로 한다. 단, 휴학생은 회원의 자격이 휴학기간동안 정지된다.

제5조(의무와 권리)

1.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2.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. <개정 2019.06.13.>
3. 본 회의 회원은 학문의 자유를 가진다.
4. 학칙 제66조 1항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언론,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. <개정 2019.06.13.>

제6조(구성) 본회의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정보학과 학생회를 중심으로 하고 집행부와 각 학년 대표학생들로 구성된다.

제2장 학생총회

제7조(지위) 학생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.

제8조(구성) 학생총회의 회장은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으로 하며 본 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.

제9조(권한)

1. 학생총회의 회원은 전체에 관련도니 중요한 사항을 토의, 의결한다.
2. 학생총회의 회원은 운영절반에 걸친 예산, 결산, 사업계획 등을 보고 받으며 할 수 있다.
(학생회장은 회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.)
3. 학생총회의 회원은 문헌정보학과 학생회 정, 부회장의 탄핵 및 학생회칙의 개폐에 관련해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.

제10조(소집)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.

1. 정기총회는 1년에 1회, 2학기 종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소집한다.
2. 임시총회는 본 회의 의장, 문헌정보학과 학생 운영위원회 1/2, 회원 1/5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
3. 학생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. 단, 긴급 소집의 경우에는 제외된다.
4.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본 회의 의장이 소집한다.

제11조(의결)

1. 학생총회는 전체회원 1/5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.
2. 의결 정족수는 전체회원 1/3이상의 참석에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문헌정보학과 학생회 정, 부회장의 탄핵은 재적회원 1/3이상의 참석으로 개최되며 참석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장 문헌정보학과 학생 운영위원회

제12조(지위) 문헌정보학과 학생 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최고 운영 기구이다.

제13조(구성) 문헌정보학과 학생 운영 위원회의 구성은 정, 부회장, 각 부서 부, 차장 및 부원, 각 학년 과, 부대표로 구성된다.

제14조(업무 및 권한)

1. 학생총회 소집 요구권
2. 학생회 회칙에 대한 개정 발의 및 심의, 의결
3.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권 및 예, 결산 안의 심의 및 승인권
4. 집행부 각 부장의 일관 인준권 및 해임 의결권
5. 문헌정보학과 학생회 정, 부회장 탄핵 및 탄핵 소추권
6.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에서 수립한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권

제15조(소집) 본 회의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를 가진다.

1. 정기운영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하며 소집일 5일전에 공고하여 의장이 소집한다.
2. 임시운영위원회는 문헌정보학과 운영위원 1/2이상의 발의로 소집하여 소집일 3일전에 공고한다. 단,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제16조(의결)

1. 문헌정보학과 학생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.
2.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제14조 5항은 재적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

제17조(지위)

1.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은 문헌정보학과 학생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의장, 문헌정보학과 학생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의 장이된다.
2.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은 학생총회 또는 문헌정보학과 학생 운영위원회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직위가 해제되지 않는다.

제18조(업무 및 권한)

1. 본 회칙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.
2. 집행부의 각 부, 차장의 임명권 및 해임 권과 부장의 부원 임명동의 요구에 대한 동의권과 거부권을 가진다.
3. 학생총회, 문헌정보학과 학생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관한다.
4.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기획을 수립하고 집행에 책임을 진다.

제19조(임기) 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 연도의 익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, 연임은 불가능하다.

제20조(권한 대행) 문헌정보학과 학생회 정 부회장이 모두 결위된 때에는 집행부 내의 따로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.

제5장 문헌정보학과 학생회 집행부

제21조(지위)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.

제22조(구성) 문헌정보학과 학생회 집행부는 정, 부회장, 각 부 부장, 차장 3학년 과, 부대표로 구성된다. <개정 2019.06.13.>

제23조(업무 및 권한)

1. 학생총회, 문헌정보학과 학생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고유 사업을 집행한다.
2.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의 일체의 사업 계획 및 예, 결산 보고서를 문헌정보학과 학생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.
3. 각 부장은 부서 모임을 주관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사 개진권을 가진다.
4. 부서별 새로 모임(각 부서 연석회의)을 가질 수 있다.
5. 본 회의 활동과 관련해 사회과학대학 학생회, 학교 및 기타 관련 기구와 협의권을 가진다.
6. 각 부서별 업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 - 1) 총무부 - 본 회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학생회의 예, 결산 및 사업 예, 결산을 담당 <개정 2019.06.13.>
 - 2) 기획부 - 본회의 목적에 맞는 모든 사업에 대한 계획 업무 담당 <개정 2019.06.13.>
 - 3) 총괄부 - 본 회의 목적에 맞는 사업 집행 시 제반사항 담당 <개정 2019.06.13.>
 - 4) 홍보부 - 본 회의 홍보 업무를 담당하며 학과와 관련 된 모든 홍보 매체를 담당 <개정 2019.06.13.>
 - 5) 3학년 과, 부대표 - 각 학년의 과, 부대표들의 대표하며 본 회의 사업 집행 시 인원 총원 및 지원 업무 담당 <개정 2019.06.13.>
7. 학생회 집행부는 학과 동아리 임원 겸직을 금한다.

제6장 선거

제24조(실시방법) 본 회의 선거는 보통, 직접, 비밀, 평등의 원칙에 의한다.

제25조(선거권) 선거권은 본 회의 재학생으로 당해 1학기 등록을 필한자로 한다.

제26조(선거의 시기) 문헌정보학과 학생회 정, 부회장은 선거는 11월에 실시한다. 단,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. <개정 2019.06.13.>

제27조(선출방법)

1. 문헌정보학과 학생회 정, 부회장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한다.
2.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 참석회원의 2/3이상 득표할 경우 선출한다. <개정 2019.06.13.>

제28조(입후보 방법)

1. 문헌정보학과 정, 부회장은 본 회의 정회원만 입후보가 가능하다. <개정 2019.06.13.>
2. 입후보 방법으로는 자기추천과 타인에 의한 추천으로 입후보가 가능하다.

제29조(당선자의 결위) 학생회 정, 부회장 당선자가 결위됐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학생회장 당선자가 결여됐을 경우 현 학생회 회장이 직무수행을 하며 다음 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.
2. 학생회 (부)회장 당선자가 결여됐을 경우 공석으로 두며 다음 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.

제7장 회칙개정

제30조(발의) 회칙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.

1. 문헌정보학과 학생 운영위원회 1/2이상의 발의
2. 본 회 회원의 1/5이상의 발의

제31조(의결 및 공표) 발의 시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문헌정보학과 학생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이 이를 5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.

제32조(발효) 개정된 회칙은 공표 후 7일 후에 발효된다. <개정 2019.06.13.>

제8장 재정

제33조(회비)

1. 본 회의 재원은 회비, 수익금 및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. <개정 2019.06.13.>
2. 본 회의 회비는 본 회 활동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9.06.13.>
3. 회비의 징수와 관리는 문헌정보학과 학생 운영위원회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19.06.13.>

제34조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<개정 2019.06.13.>

제35조(예산편성) 본 회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후 2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최초 학생총회에 제출한다. <개정 2019.06.13.>

제36조(결산) 본 회 회장은 연간의 업무와 회비의 지출 등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06.13.>

제9장 보칙

제37조(관례) 이상의 회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일반적 사항은 문헌정보학과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. <개정 2019.06.13.>

부칙

본 개정 회칙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